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4653]」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201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와 관련, 2013년 이후 지난 8월 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 필요
-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 데, 이로 인하여 환자가족과의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대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등)

2 개정안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

대지급금 미상환에 따른 강제징수 및 청구 절차 간소화 : 찬성

- 동 개정안에서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

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환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여 진료비를 이유없이 체불하고 악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대지급 청구 지연 등으로 환자가족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 응급의료비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어 응급의료비를 신속히 환수해야하며, 응급의료기금 등의 재정손실 최소화로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함. 또한,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환자 및 환자가족간의 마찰을 최소화해 신속한 응급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이 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우리협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동 제도가 의료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비 미수 금액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

<p>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p>	<p>----- -----.</p>		
<p><신 설></p>	<p>⑥ 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개정안 찬성></p>	<p>악의적인 응급진료비 체불자에 대한 제 조치를 마련하여 재정손실 최소화</p>
<p>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⑦ ----- --제5항----- ----- ----- ----- ----- ----- -----.</p>	<p><개정안 찬성></p>	
<p>⑥ (생략)</p>	<p>⑧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p>	<p>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p>	<p><개정안 찬성></p>	
<p>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p>① 제22조제5항-----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